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글 편집실

Q **소규모 사업장 관련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분기 중에 채용된 노동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반드시 해당 분기 내 실시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상 '매분기'의 개념은 회계 연도상의 개념이 아닌 '사업을 개시한 날', '노동자가 채용된 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월 1일에 채용된 노동자의 1분기는 4월 30일이 될 것이며 해당 분기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교육시간만큼 정기교육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교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일용노동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 시 1시간의 교육을 시행했지만, 2021년 고용노동부의 일용노동자 채용 시 교육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용노동자가 채용 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노동자가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파견노동자에 대한 정기교육 시행의 주체는 노동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주의 개념은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파견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조심하세요! 사칭 주의보

#고용노동부 사칭 #안전보건공단 직원 사칭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강사를 보내드릴 테니 바로 교육받으세요."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의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시 법정교육시간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현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2023-교육혁신실-80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6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